

조례안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준]

목 차

1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4	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5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4
6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7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8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 동의안	56
9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2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10. 1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3. 10. 13.

2.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와 일부 기능이 중복되어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안전이 있을 때마다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 설치 근거 등 정비(안 제2조)
- 나. 위원회 비상설화함(안 제3조제5항)
- 다.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정비
 - 1) 변경: 회의안건 부치는 권한 및 회의소집 권한(안 제2조제7조)
 - 2) 삭제: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 임기(현행 제4조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
- 2)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8. 16.~9. 5.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와 일부 기능이 중복되어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한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 회의안건, 회의소집 권한의 변경,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 임기 조항의 삭제 등 비상설화에 따른 개정 내용을 담고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의 2항에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긴급하게 구성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기후위기 등 새로운 재난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로 과거의 공공기관 중심의 자연 및 사회재난 안전관리에서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하는 민관협력의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과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3. 8. 17.] [법률 제19406호, 2023. 5. 16., 일부개정]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①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9조제1항제3호, 제3호의2, 제6호, 제6호의2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 조정

2.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3. 제26조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제71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5. 그 밖에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조정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④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⑦ 조정위원회 및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삭제 <2013. 8. 6.>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8. 17.] [대통령령 제33659호, 2023. 8. 8., 일부개정]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④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 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 다.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
-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국 규모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협회 등의 민간단체 대표
 -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10. 1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3. 10. 13.

2. 제안이유

- 구호 및 복구비 등을 지원한 사회재난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거창군이 부담한 구호 및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주요내용

- 가. 원인제공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의 구상 및 책임을 정함
(안 제4조의2)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9. 18.~10. 1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 구호 및 복구비 등을 지원한 사회재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거창군이 부담한 구호 및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2.~13. (생략)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10. 1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3. 10. 13.

2. 제안이유

- 공영주차장 내의 장기불법주차, 주차구역에서 상행위·야영 등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법령 범위에서 주차를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추가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주차 거부금지 예외사유 확대함(안 제4조)
 - 1)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행위·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 3) 취사·음주·흡연, 폐기물 투기를 하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2시간 무단 장기주차하는 경우
 - 5) 주차요금을 3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경우 등
- 나.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사항 변경 등 정비(안 제2조의2·제2조의3·제15조·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주차장법」 제8조·제8조의2·제10조·제13조·제15조·제17조
- 2) 「지방자치법」 제2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9. 15.~10. 5.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거부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차장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 캠핑 열풍으로 캠핑용 차량은 급증하고 있지만 법규준수 의식은 이에 못미치는 상황에서 장기 알박기 차박과 불법 쓰레기 투기 등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피서철에는 공영주차장 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음.
-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나 **늘어나는 캠핑 수요에 따른 캠핑장 신설 등 관련 인프라 구축도 병행되어야 될 것임.**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 법령

□ 「주차장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2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6.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 7.~13. (생략)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2.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10제2항(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타법개정]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21. 4. 20.]

□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49호, 2018. 10. 25., 일부개정]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43호, 2020. 6. 25., 일부개정]
<p>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등) ①·② (생략)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실태조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실태조사: 조사대상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법 제6조제1항·제19조 및 제19조의5에 따른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 나.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여부 다. 법 제19조의9 및 제19조의23에 따른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이행 여부 라. 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치 관리인의 배치 여부 마. 법 제19조의22제7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④ (현행과 같음)</p>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699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3. 6. 29.] [법률 제19315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6. 11.] [대통령령 제33526호, 2023. 6. 9., 일부개정]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등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방치자동차”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때
2. 해당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
3. 방치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방치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를 폐차할 수 있다.

1.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등록된 자동차로 본다)
2.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자동차
3. 구조·장치의 대부분이 분해·파손되어 정비·수리가 곤란한 자동차
4. 매각비용의 과다등으로 인하여 특히 폐차할 필요가 있는 자동차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자동차를 제5항에 따라 폐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해당폐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폐차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11.] [국토교통부령 제1243호, 2023. 8. 11., 일부개정]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동차처리명령서에 의한다.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사례

질의제목 : 노상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및 취사·음주·흡연·고성방가·폐기물 투기를 하는 경우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등 관련)

관련문서 : 기장군 기획예산과-12109(2021. 1. 13.)

1. 질의요지

가. 노상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및 취사·음주·흡연·고성방가·폐기물 투기를 하는 경우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및 취사·음주·흡연·고성방가·폐기물 투기를 하는 경우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8조에서는 노상주차장은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군수등”이라 함)이 관리하거나 군수 등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하고(제1항),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는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차장법」은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같은 법 제8조의2에서 군수등은 노상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고,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자동차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차장의 관리에는 주차장을 목적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노상주차장이 주차장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노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및 취사 등을 하는 것은 주차장을 주차장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노상주차장의 관리자가 노상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및 취사·음주·흡연·고성방가·폐기물 투기를 하는 경우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노상주차장을 주차장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등 각종 위험을 방지하여 주차장의 안전하고 적절한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군수등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

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차장법」은 군수등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법 제15조제2항에서 노상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이동 등을 시킬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노외주차장의 관리에도 주차장을 목적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노외주차장이 주차장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노외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주차장법」 제17조제2항에서는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라는 점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차장의 관리에 주차장을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이용의 의미가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가 노외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및 취사·음주·흡연·고성방가·폐기물 투기를 하는 경우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노외주차장을 주차장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등 각종 위험을 방지하여 주차장의 안전하고 적절한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10. 1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3. 10. 13.

2. 제안이유

-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조례로 위임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비용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령 불부합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안 제2조·별표)
 - 1)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의 산정기준
- 나. 「도로교통법령」 재기재 또는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조항 삭제함(현행 제2조·제4조·제5조)
 - 1) 차량의 견인: 법 제35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 2)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4조
 - 3) 대행비용의 지급: 법 제35조제6항, 시행령 제15조·제1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9. 15.~10. 5.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조례로 위임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비용 산정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며
- 현재 거창군은 견인지역 위주로 시행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 위반에 대해서 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에서 정한 지역에서 교통위험을 유발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주차 차량에 대해서 견인지역 구분없이 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며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58호, 2023. 1.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18.>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 7의2. “노면전차 전용로”란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 또는 차로를 말한다.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16. (생략)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자동차
- 2) 건설기계
- 3) 원동기장치자전거
- 4) 자전거
-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7의2.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 1) 승용자동차
- 2) 승합자동차
- 3) 화물자동차
- 4) 특수자동차
-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8의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종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18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 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1의3. “실외이동로봇”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3. (생략)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7.~33. 9생략) [전문개정 2011. 6. 8.] [시행일: 2023. 10. 19.] 제2조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3조(주차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

차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①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3. 7. 4.] [대통령령 제33547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 대상 차임을 알리는 표지(이하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라 한다)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 대상 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소유자나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가 그 차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를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의 보관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하고 있는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날부터 14일간 해당 기관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부를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관하고 있는 차의 종류 및 형상
2. 보관하고 있는 차가 있던 장소 및 그 차를 견인한 일시
3. 차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
4. 그 밖에 차를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1. 비밀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경쟁입찰에 부쳐도 입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의 재산적 가치가 적어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차가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를 폐차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를 매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각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그 말소등록을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1. 매각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방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주소

제15조(소요비용의 징수 등)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

부터 그 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로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30대

나. 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지역: 15대

2. 1대 이상의 견인차

3. 사무소, 차의 보관장소와 견인차 간에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4.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제17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 ①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대행법인등을 지정한다.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대행법인등은 차의 견인·보관 중에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 가입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대행법인등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18조(소요비용의 대행법인등에의 귀속) 대행법인등이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한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소요비용은 그 대행법인등의 수입으로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3.7.4.] [행정안전부령 제415호, 2023.7.4., 일부개정]

제22조(주차위반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등)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 표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경

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 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의 등록번호·차종 및 형식
2. 위반장소
3. 보관한 일시 및 장소
4. 통지한 날부터 1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④제3항에 따른 보관 중인 차의 인수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⑤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경우의 인수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 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삭제 <2022. 12. 30.>

②관할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대행법인등을 지정한 때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경찰서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대행업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은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행법인등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공탁을 하여야 하며,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대행업지정증을 교부하는 때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4조(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정지에 관한 청문)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정지의 기준)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 및 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정지등의 기준(제25조관련)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5차위반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위반	경 고	정지 1월	정지 3월	정지 6월	지정취소

(주)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 가. 가중사유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차량 소유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사유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차량 소유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대행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개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법인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대행능력	주차면적	견인차 대수	
견인지역			
비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별지 제13호서식]

제 호	대행업지정증
대표자 :	생년월일:
주 소 :	
명 칭 :	
소재지 :	
조 건 :	
「도로교통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자를 견인 등의 업무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장	
귀하	

21026-28311일
90. 10. 29. 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시행 2023. 1. 1.] [행정안전부훈령 제266호, 2022. 12.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고지서 등) ① 고지서 등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 전
2. 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기타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고지서는 그 기간 만료의 다음 날

② 고지서 등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지방세
2. 납입고지서: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 외의 수입
4. 납입서: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③ 제2항의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 「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0.11.15 조례 제1600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띄어쓰기 일괄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법 제31조 및 동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거창군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할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 ① 영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군수 또는 대행법인 등이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견인한 자동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13조의5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 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1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별 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제1항관련)

1. 견인요금표

대상차량/구분	견 인 료	
	기본요금(편도5km까지)	추가요금(매 km까지)
2.5T미만	20,000원	1,000원
2.5T이상6.5T미만	25,000원	1,400원
6.5T이상	40,000원	2,500원

2. 보관요금표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한 1급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10. 1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3. 10. 13.

2.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2005 2. 25.)하였으나, 법령 개정(2014. 1. 17.)으로 군수가 고시할 수 있는 공장건축 가능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으로 한정됨에 따라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 20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9. 15.~10. 5.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법령 개정(2014. 1. 17.)으로 군수가 고시할 수 있는 공장건축 가능지역이 한정됨에 따라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 시점에 비추어 볼 때 폐지가 늦은 것으로 향후 조례 정비에 발 빠른 대처가 요구됨.
-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으며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4. 22., 2011. 8. 4., 2015. 8. 11., 2017. 4. 18., 2023. 3. 21.>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3.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2024. 3. 22.] 제7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7. 18.] [대통령령 제33637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

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1. 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1. 6., 2012. 4. 10.>

1.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2.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 별표 20 개정연혁

[별표 20] <개정 2022. 1. 18.>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계획구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 (1)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 진처리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 (마) 동·식물 등 생물을 기원(起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3)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 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및 같은 호 너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 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제1호자목(7)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창고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20] [시행일:2014.7.15]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아. (생략)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제외한다)

(1)~(6) (생략)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너. (생략)



[별표 20] 2003. 1. 2.(제정)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19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 및 나목과 바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운동장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별표 19 제2호 사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 (2) 화학제품조제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 (5) 섬유제조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05. 2. 25.]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1737호, 2005. 2. 25.,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20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지역) 군수는 관할지역내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하 “공장건축가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법 제76조 및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 부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 까지는 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관리지역"이라 함은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말한다.
2. "관리지역"이라 함은 법 제36조 제1항 제2호를 말한다.
3. "공장"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중 각 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 제71조 제1항 제18호 별표19 제2호 사목 (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 다. 제1차 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 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제4조(지정시 고려사항)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 계획 및 개별법에 의한 관련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공장건축에 따른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의 처리 및 공급 용량 등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5조(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 ① 군수는 관할지역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
3. 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지역
4.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지역
5.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단체에서 요청하는 지역
6. 그 밖에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 군수는 관할지역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
2.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연도구역과 고속교통구역
3.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4. 지방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5.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6. 유효저수량 30만^m³이상인 농업용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5킬로미터 이내(다만,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7. 「산림법」에 의한 보존국유림·보안림·천연보호림·채종림·시험림·산림 훼손 허가제한 지역과 「임업진흥촉진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및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수보호구역
8.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다만, 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10. 「지하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장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11. 기존의 집단취락과 500미터 이내인 지역
12. 지방상수도 관로매설지역 및 농업용 배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당해 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지역
13. 농업용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14. 경사도 18도 이상인 지역이거나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이상인 지역
15. 개발로 인하여 산림축 또는 자연생태계의 연속성을 과도하게 단절 시키는 지역

제6조(지정규모)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지정면적은 1만5천 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되, 입지수요 및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계획수립) ① 군수는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없도록 공장건축가능 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재 토지이용상태 및 미래 이용계획, 개별법에 의한 공장입주 제한 유·무, 상습재해지역여부 등을 조사 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목적·위치·면적, 토지이용관계, 입주가능공장업종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수렴)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정계획에 대하여 사전공람 등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절차) 군수는 지정계획에 대하여 관련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이미 지정된 공장건축가능지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당해 지정지역의 100분의10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지정·고시)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된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 및 지역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목적
2. 지정면적
3. 입주가능공장의 업종
4. 위치도
5. 편입토지조서 및 지적도
6. 지정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내용

제11조(지정·고시내용의 변경제한)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이나 당해 구역 및 인근 지역의 여건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지원) 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거창군 조례 제 1737호, 제정 2005.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10. 1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3. 10. 13.

2. 제안이유

- 「스포츠클럽법」이 제정(시행 2022.6.16.)되어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제정된 「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는 폐지하고, 지정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창군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정스포츠클럽 지원을 신설함(안 제8조·별표)
- 나. 지정스포츠클럽 우선 수의계약 등 신설함(안 제1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스포츠클럽법」 제13조·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2) 「지방자치법」 제28조

다. 예산조치: 2023년 예산 145,000천원 확보

라.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마.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7. 14~8. 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9. 18.~10. 1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이 제정(시행 2022.6.16.)되어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제정된 「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는 폐지하고 지정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 안 제8조제2항제8호의 지원대상에 지정스포츠클럽을 추가하고 별표 지원분야별 세부 지원내용을 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그러나 신설되는 제16조의 1항과 2항은 법령 중복 재기재 사항으로 조례에 기재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그 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스포츠클럽법」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52호, 2021. 6. 15.,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3.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선수 육성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선수의 발굴·육성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보고·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700호, 2022. 6. 15., 제정]

제9조(선수의 육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지원
2. 수준별·종목별 스포츠클럽 대회의 개최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그 밖에 우수한 선수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4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9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시행 2023. 1. 2.] [행정안전부예규 제236호, 2022. 12. 28., 일부개정.]

제20조(지방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며 다음 각 호의 지방보조사업 등을 주요 점검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중 지방보조금 규모가 3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의 경우
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한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4.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⑤ 국비 매칭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집행점검을 실시한 경우 이 기준에 따른 집행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 「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

[시행 2019. 10.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포츠클럽 지원) ① 거창군수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주사무소의 소재와 회원의 주소가 거창군에 있는 스포츠클럽으로 한다.

제3조(지원 사업) 제2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신청) 제3조 각 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한 차례 이상 보고를 하게 하고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서 장부·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검사결과 스포츠클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권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10. 1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3. 10. 13.

2. 제안이유

-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스포츠클럽법」이 제정·시행(2022. 6. 16.)되면서 스포츠클럽이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사항을 정하여 군의 스포츠클럽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함(안 제15조)
 - 1) 근거: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
 - 2) 감면대상 및 감면율
 - 가) 지정스포츠클럽: 100분의 80
 - 나)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100분의 50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스포츠클럽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5. 3.~5. 2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되면서 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감면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 지정스포츠클럽과 스포츠클럽의 감경기준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5조 제1항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대한 감경규정이 있고 그 기준은 별표2와 같다고 되어 있음.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감경규정과 감경기준을 2항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됨
- 그 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 법령

□ 「스포츠클럽법」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52호, 2021. 6. 15., 제정]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700호, 2022. 6. 15., 제정]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1. 4.] [법률 제18860호, 2022. 5. 3., 일부개정]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10. 1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3. 10. 13.

2. 제안이유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거창 화강석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코자 함

3. 주요내용

- 출연개요
 - 근거법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대 상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사장 구인모)
 - 사 업 비 : 24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24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2023년 예산액	2024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균 비	기 타
2024년	240	240	240			240	

※ 2023년 출연금 240백만원(2023년 대비 동결)

- 사업내용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217백만원
(인건비 198백만원, 운영비 19백만원)
 - 공인시험기관 및 조달전문검사기관 운영을 위한 장비 구입 : 23백만원
- 부서의견
 - 거창 석재산업 발전의 중추기능을 맡고 있는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2010년 구매한 장비의 내구연한 경과 및 사용빈도 증가로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 구입을 통한 자생력 확보

4. 참고사항

- 관련법규 및 조례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관계법령 : 붙임 1
- 출연 기관현황 : 붙임 2

5. 검토의견

- 본 출연안은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 화강석 연구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기업애로사항 지원, 거창화강석 기술개발 지원, 석재원산지 검증 등 지역 화강석 산업에 있어 꼭 필요한 기관으로 판단되며
-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됨.

관련 법령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 2006.12.12 조례 제182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 2조 (법인격 및 명칭)

연구센터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라 한다.(개정 2008. 1. 14)

제 3조 (사무소)

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 4조 (운영 등)

①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8. 1. 14)

② 연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조 (임원)

① 연구센터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 6조 (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정적인 원석 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2.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4.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유통망 구축 운영사업
5. 화강석 제품의 성능 시험 및 검사, 품질 평가 등 사업
6.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7조 (재산조성 및 운영경비)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제 8조 (수익사업)

연구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 9조 (출연금 등의 지원)

- 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연구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 11조 (업무의 위탁)

- 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 12조 (보고 및 검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연구센터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 연구센터 일반현황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연구센터 현황

- 법 인 명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사장 : 거창군수)
- 법인허가(설립등기) : '07. 1. 31.(자본금 : 10백만원(거창군 출연))
- 임원현황 : 이사장 외 14명 (이사 10, 감사 2, 간사 1, 고문 1)
- 직원현황 : 총 5명(센터장 1, 연구직 2, 생산직 2)

성 명	직 책	담 당 업 무	학위/자격
최태환	연구센터장	연구센터 업무 총괄 / 기업지원 / 협력네트워크	학사/'가'
정영일	책임연구원	시험기관 총괄 / 법인 운영 / 사업 관리 / 기술개발	석사/'가'
이승안	연구원	시험분석 품질 및 기술업무 지원 / 채석기술 지원	학사/'다'
조형철	생산/시험팀장	기능석재 공장운영 책임, 품질시험실무 등	학사/'다'
이진호	생산/시험주임	품질시험실무 및 보유 장비운영 등	학사/'라'

II 거창화강석 산업현황

□ 석재산업 현황

○ 채석 및 가공업체 현황

- ▶ 종사인구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음

(물류, 유류, 기계, 공구 등 지역경제에 재투자 비율이 높음)

(단위 : 개소 / 명 / 백만원)

구 분	계	석산협회	석재조합
업체수	34	12 (원석 11, 골재 1)	22 (회원 19, 비회원 3)
종사자수	176	101	75
매출액 (2022년)	60,515	30,682	29,833
※ 농업조수익 (2022)	쌀(50,645), 사과(98,504), 딸기(49,440), 한우(187,328)		

※ 비회원사(수가공), 유통업, 중간소매, 석시공 등은 매출액 제외

※ 석산협회 매출액은 2021년 기준

○ 석재 관급시장 연간 매출 규모(조달청)

- ▶ 관급시장규모 대비 거창지역 매출규모는 동일 수준을 유지 중임
(원석, 인건비, 유류비, 물류비 등 부대비용의 증가로 내부 수익성은 악화)

(단위 : 백만원)

관급시장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 국	384,960	374,732	371,758	380,103	415,008	391,555
거 창	38,200	44,364	38,971	38,390	40,137	39,350
거창매출규모	10%	12%	10%	10%	9.7%	10.0%

※ 관급계약 매출액 기준으로 사급 및 기타 석제품은 제외

Ⅲ

연구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성과

□ 2023년도 성과목표 및 실적

구 분		'23년도 성과 목표	'23도 실적 (9월말)
기업지원 (석산/가공)	기업애로사항 지원	20건	10건
	기업샘플/시제품 제작	10건	6건
	원산지 검증 지원	2건	0건
	석재 시험분석 지원	600건	391건
	채석/사면 평가 지원	1건	1건
	석재 대외업무 지원	20건	6건
	홍보 마케팅 지원	10건	4건
학술연구용역	23 석재 품질 분석 외	3건	3건
연구개발	기술개발 및 제품화	2건	2건
경영수익	공인시험기관 운영	170,000천원	126,401천원
	채석/사면 평가 지원	15,000천원	15,000천원
	학술연구/기타 수익금	100,000천원	43,873천원
	합 계	285,000천원	185,274천원

□ 주요업무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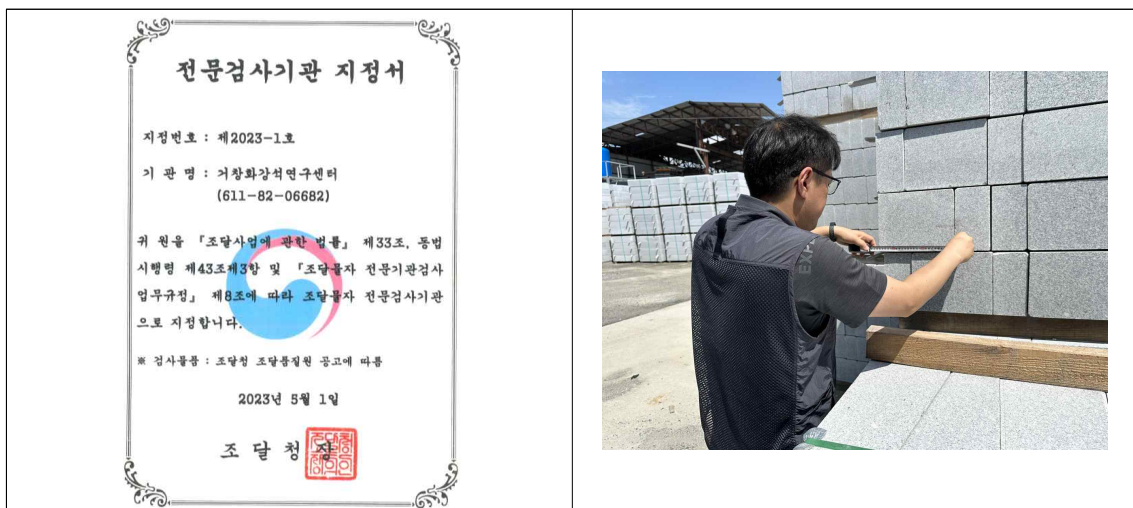
○ 조달청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지정

- ▶ 지정일자 : 2023년 5월 1일
- ▶ 전문검사기관 가능 물품

물품분류 번호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11111604	화강암
11111697	잡석
11111698	조경석
30131503	석재블록
30131702	석재타일 및 판석

○ 기대효과

- ▶ 2013년 석재, 2020년 골재 분야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 이후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석재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 확립 및 인지도 제고
- ▶ 관내 석재기업에 기술지도 및 검사지원을 통해 조달물자 납품검사 업무의 편리성과 제공
- ▶ 검사 수수료 관련하여 수익창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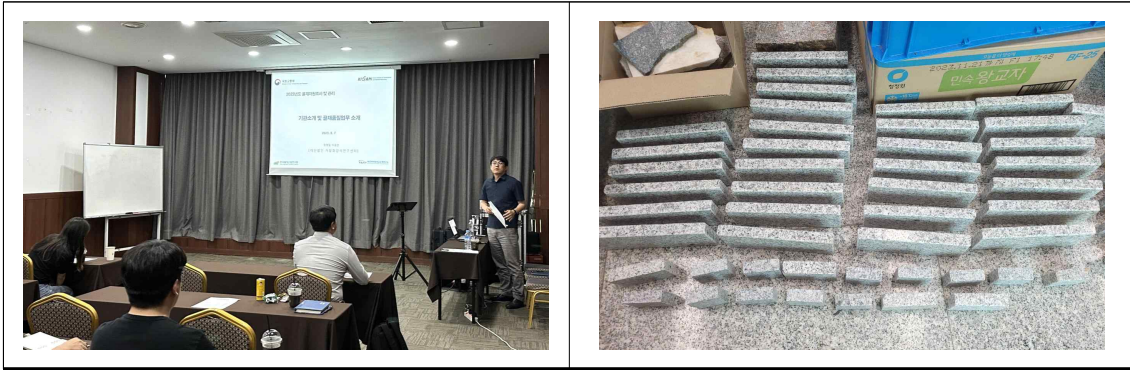
○ 석재관련 기업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

- ▶ 석재가공부산물 재활용 방안 및 유해성 분석 지원
- ▶ 라돈, 방사능 등 유해성 분석을 통한 거창화강석 품질우수성 확보
- ▶ 홍보물 편집 및 제작 요청에 따른 제작 지원 등



○ 석재관련 대외업무 지원 및 네트워크 활동

- ▶ 골재자원조사 착수보고회 및 중간점검 워크숍 참가
-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골재생산시스템 연구를 위한 지원
- ▶ 한국임업진흥원 석재자원조사 시추 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술 자문
- ▶ 조달청 쇼핑물기획과 암 판정 기준 및 해석에 관한 자료 제공
- ▶ 거창문화원 “거창 둔마리 고분벽화” 교재 제작 및 미술 교구 제작 지원



○ 공공·민간부문 연구용역 수행

- ▶ 한국임업진흥원 ‘2023 석재 품질 분석’ 용역 수행
- ▶ 국토교통부 “2023 골재자원조사/골재 불소 발생평가” 용역 수행
-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23 석재자원조사 ” 용역 수행 등
- ▶ 2023 토석채취허가지 항공촬영 및 지적 분석



○ 거창화강석 품질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 ▶ 거창화강석, 조달물품 및 수입석 대상 석재 유해성(라돈) 분석
- ▶ 거창화강석, 조달물품 및 수입석 대상 석재 유해성(석면) 분석
- ▶ 거창화강석, 조달물품 및 수입석 관리를 위한 대자율 측정



○ 거창화강석 홍보/마케팅 업무 지원

- ▶ 거창화강석 조형물 제작 관련 자문 및 홍보
- ▶ 거창화강석 품질 관련 자문 및 홍보
- ▶ 조달물자 전문검사 기관 홍보

HOME > 사회 > 행정/자치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조달청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지정

이용구 | 승인 2023.05.07 15:54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조달청으로부터 조달물자 품질관리를 위한 납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조달물자 전문검사는 조달청에서 구매 및 공급하는 조달물자에 대한 검사를 전 기관이 실시하는 제도로서 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검사업무에 필요한 시험 설비 인력 등 국가표준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법인으로 조경석, 석재불력, 석재타일 및 판석, 화강암, 잡석 등 5개 대상물품에 대해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 조달물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성과

○ 조경석 단체표준 규격 제정을 통한 거창기업 매출액 증대

- ▶ 2012년 조경석 단체표준 제정을 위한 용역 수주 및 단체표준 제정
- ▶ 2013년 조경석 조달다수공급자(MAS) 물품 등록

(단위 : 억)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거창 업체수	3	5	7	8	9	11	10	9	11	11
매출액	37	25	92	86	87	94	88	109	139	101

○ 석재 원산지 검증활동 지원 효과

- ▶ 국내 유일의 석재 원산지 검증기관 → 거창화강석 사용 유도
- ▶ 원산지 검증에 따른 효과 : 거창화강석 보호 및 업체 매출 증대
- ▶ 울산지역 관급 물량에 대한 관내업체 계약이 약 76% 정도 체결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9	2020	2021	2022
울산전체 관급물량	1,819	2,958	2,482	1,854	1,841
울산지역 "ㄷ"석재	1,114	-	-	-	-
거창지역 관내업체	520	1,813	1,918	1,371	1,402
타 지역 석재업체	202	1,145	564	483	439

○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통한 법인 인지도 증대 및 매출 증가

- ▶ 2013년 석재 관련 5개 시험항목 인정
- ▶ 2020년 골재 관련 8개 시험항목 인정

(단위 : 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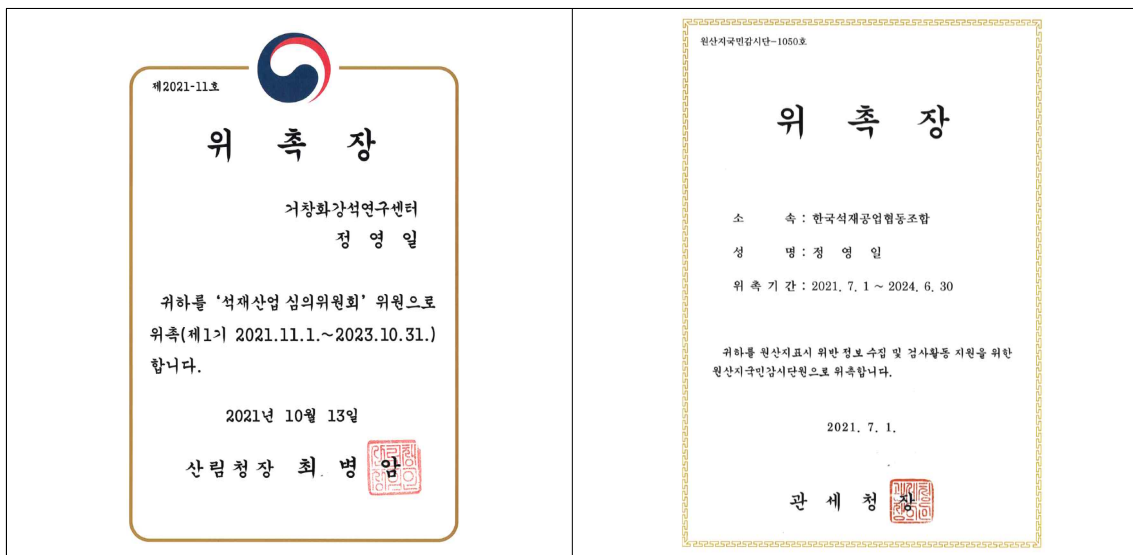
년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매출액	1	2.1	1.9	2.2	1.8
건수	328	359	605	584	595

○ 거창화강석 기술개발 및 상용화 실적

- ▶ 폐자재를 활용한 굴림보도판석 개발
- ▶ 성곽석 제조 및 가공기술 개발
- ▶ 조형물, 열주, 벤치, 앉음벽 등 제품 개발
- ▶ 미끄럼 방지를 위한 무광택 판재 품질기준 마련
- ▶ 가공용 톱을 이용한 빗살무늬 판석 제조방법 및 제품 개발

○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연구센터 및 거창화강석 인지도 증대

- ▶ 석재산업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산림청) : 정영일 책임연구원
2021. 11. 1 ~ 2023. 10. 31 (2년)
- ▶ 원산지 국민감시단원 위촉(관세청) : 정영일 선임연구원
2021. 7. 1 ~ 2024. 6. 30 (3년)



□ 석분슬러지 처리 및 폐석 재활용 지원

○ 석분슬러지 유해성 분석 지원

- ▶ 석재 가공시 발생하는 석분슬러지의 처리 및 재활용 방안을 모색

- ▶ 석분슬러지 관련 각종 시험, 분석업무 등 기업지원 및 애로사항해결
- ▶ 석분슬러지 유해성 분석 ⇒ 관내 업체 유해성 분석지원

○ 폐석 처리 및 재활용 지원

- ▶ 폐석을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등록 유도하여 새로운 재화가치 창출
- ▶ 한국골재채취업협동조합 단체표준 제품인 잡석으로 종목 추가 등록 (전 가공업체 등록 권장)
- ▶ 유상처리 되던 잡석의 판매 매출 발생 : 200,000원/대(25톤 덤프)

□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 활용

연구개발 추진내용	실적 및 성과	기업체 공동개발 및 기술지원	연구센터 수익사업 기업체공동기술개발
석재품질 평가	석재원산지 검증/판별방법	석재원산지검증 조달청원산지검증	원산지검증수수료
	국제공인시험 기관인정	거창업체(50%할인) 시험분석지원	거창지역/전국 시험분석 수수료
	단체표준 시험기관지정	전국석재관련업체 시험분석 지원	가공조경석형상평가 기술개발용역수행 (특허1건등록/2건출원)
급경사지 안정성평가 기술개발	급경사지안정성 평가분석	사면안정성평가/보강 (3개업체 지원)	거창 및 타 지역 사면안정성평가
	사면안정성평가 시스템 구축	석산인허가관련지원 석산 환경재해평가 및 사면분석 지원	드론을 이용한 사면 평가/지형변화 특허1건 출원
석분슬러지 광물자원화	석분슬러지 유해성 분석	폐기물유해성평가 업무지원(24개업체)	재활용관련기술 (세라믹기술연구원)
	석분재활용 가능성 평가	폐기물 투수/다짐 시험분석지원 폐기물관련법 개정(석산복구사용)	석분활용방안 (도시건축과 연계, 특허 1건 출원)
문화관광 콘텐츠개발	디자인/실용화 제품	석재활용제품개발 (기업체 공동개발)	기업체 공동기술 개발 컬링스톤 상용화
	CNC 장비활용 개발	CNC 장비 활용 가공제품제작지원	
석재표면 처리기술 개발	컬러석재 제조방법	컬러석재 시제품 샘플제작/납품	기업체 공동기술 개발 (특허 3건 출원) 한영대리석 사고석 모동석재 표면처리 (혼드, 브러쉬 등)
	석재표면 처리방법	석재표면처리기술 (기업체공동개발)	

IV

연구센터 향후 운영계획

□ 석재산업 추진방향

- 석재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거창 화강석 산업 중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산림청)을 기초로 하여 기본계획 수립
- 거창화강석 산업발전 기반조성-산업지원 및 육성의 단계별 추진

□ 주요 추진사업

- 거창화강석 산업발전 방향 검토
 - 사업목적 : 거창화강석 산업지원 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 자료 확보
 - 사업내용 : 산업대분류상 거창화강석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지역경제 기여효과 정량적 분석 및 거창화강석 산업발전 방향 검토
- 거창화강석 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 및 신청
 - 사업목적 : 거창화강석 산업진흥 도모를 위한 재정지원 확보
 - 사업내용 : 채석지구(골재 포함) 2개소, 가공 및 연구지구 1개소 지정 신청

□ 기대효과

- 지역에서 차지하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중요성 인식 제고
- 원활한 원석공급으로 거창화강석 산업 활동의 연속성 보장
- 채석부터 가공까지 거창화강석 산업의 원스톱 종합지원 체계 완성
-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 및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 석재산업을 선도하는 거창군 위상 및 거창화강석 산업 중흥 기대

붙임 2

출연기관 현황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설립근거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			전화번호 : 055-943-3924			
	규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홈페이지 : granite.re.kr			
주요연혁	법인설립허가 : '07. 1. 31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23. 1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5명		5명	0명			
임원 ('23. 10. 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구○○	거창군청(거창군수)	당연직			
	상임이사	최○○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장	"			
	비상임이사	이○○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장	"			
		이○○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장	"			
		정○○	거창석제조합(주) 대표	"			
		김○○	거창석산협회장	"			
		이○○	거창군청(경제기업과장)	"			
		주○○	경남도립거창대학 교수	'22. 3. 21. ~ '25. 3. 20.			
		김○○	한국승강기대학 교수	'22. 3. 21. ~ '25. 3. 20.			
	감사	임○○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22. 3. 21. ~ '25. 3. 20.			
		신○○	거창군청(산림과장)	당연직			
	변○○	변범식변호사사무소 대표	'22. 3. 21. ~ '25. 3. 20.				
주요기능	거창화강석 1, 2차산업 관련 기업지원, 연구 및 개발, 품질유지 및 관리, 공인시험 서비스 등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10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24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백만원) '22.12.31기준	자산	591 (자산 총액)
	예산액 ²⁾	1,022	922	1,009		부채	9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³⁾	180	260	240		자본 ¹⁾	582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2. 12. 31. 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63			174		85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10. 1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3. 10. 13.

2. 제안이유

- 장례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거창지역자활센터 에코위싱사업단에게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위탁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탁명 :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운영
- 나. 위치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496-6번지
(거창지역자활센터 에코위싱 사업단 사업장 지내)
- 다. 위탁사무
 -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시설 운영·관리
 - 다회용기 세척장 시설 운영

- 다회용기 세척물품 및 차량 운영
- 다회용기 및 운영물품 운영

○ 다회용기 대여 및 회수, 세척, 공급 운영 등

라. 위탁기간 : 3년(2024. 1. 1. ~ 2026. 12. 31.)

마. 위탁사업자 : 경남 거창지역자활센터(센터장 신말순)

→ 자활근로사업 에코워싱사업단 연계 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자활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전년도 또는 현재 수행 중인 자활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기수행 중인 기관과 재계약이 가능

바. 소요예산 : 없음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장점

○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사용 등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을 기존에 일부 세척시설을 갖추고 어린이집 식판 등 다회용기 세척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에코워싱사업)에 위탁 시행 함으로써, 자활근로 활성화뿐만 아니라 1회용품 폐기물 감량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나. 관계법규

-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
-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8조
-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제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21조의3
- 「자활사업안내(I)」 지침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다. 그간 추진현황

- 2023. 3. : 거창군↔거창지역자활센터↔장례식장 업무협약 체결
- 2023. 10. : 세척시설 및 다회용기 등 시설 확충 완료

라. 향후계획

- 2023. 10. :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3. 12. : 위수탁 협약 체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거창지역자활센터 에코워싱사업단에게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재 다회용기 세척사업을 자활근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에코워싱사업단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운영비와 인건비 등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 예산은 없으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위탁운영 물품은 확보된 상태임.
- 거창군↔거창지역자활센터↔장례식장 업무협약이 2023년 3월에 체결되어 있어 거창지역자활센터 에코워싱사업단에게 민간위탁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근거에 의해 제출된 의안으로 본 동의안의 경우 위탁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 법령

□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2. 자원순환사회에 관한 연구·기술개발 사업
3.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순환이용 사업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8조(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보급
2. 자원순환 육성·지원
3. 자원순환 인식 확장
4.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무료 지원
5.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주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1회용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4.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6.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7.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② 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비영리법인·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 자활사업 안내(Ⅰ) 지침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

전년도 또는 현재 수행중인 자활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기 수행중인 기관과 재계약이 가능함

- 시장진입성, 자활기업 창업 전망, 수익금발생, 참여자의 자립유도 가능성 등을 검토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 위임 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붙임2

위탁 운영 물품

취득 재산명	물품 사진	규격 및 모델명	수량 (대)	취득일자
주방기구 소독기		선경산업, SK-N508, 자외선+플라즈마이온소독/컵, 1500×600×1900mm	1	2023-07-10
주방기구 소독기		선경산업, SK-N0018S, 열풍소독, 1800×750×1950mm	1	2023-07-10
주방기구 소독기		선경산업, SK-N0015S, 열풍소독, 1500×750×1950mm	1	2023-07-10
상업용 식기세척기		한소닉, HDF-1002GD, 2탱크/건조형/가스식, 5850×930×1900mm	1	2023-07-10
상업용 식기세척기		한소닉, HDF-E, (부품)에너지세이빙장치, 1000×750×600mm	2	2023-07-10
냉난방기		삼성전자, AP230RSPDHH1, 냉방23/난방26kW, 직립형	1	2023-07-28

취득 재산명	물품 사진	규격 및 모델명	수량 (대)	취득일자
냉난방기		삼성전자, AP072CSPFBH1PP, 냉방7.2/난방8.5kW, 직립형	1	2023-07-28
냉난방기		삼성전자, (TH)AR07T9191HZ, 냉방2.7/난방3.2kW, 벽걸이형	1	2023-07-28
상업용 식기세척기		상업용식기세척기, 자습, TR-1800S, 1800×870×850mm	1	2023-09-13
살균수 제조장치		수처리 제조장치, 워터포인트, WATER FALL, 1000L/hr (800×960×1600),필터류포함	1	2023-09-13
다회용기 (식기세트)		밥·국그릇, 접시(大, 小), 소스용 접시, 수저	2,500	2023-08-25
수거·운반 차량		전기화물트럭, 기아, 봉고III EV 1톤 킹캡 초장축 2WD GL 미닫이탑차 플러스형 2023년, 적재용량1000kg	1	2023-09-27